

【별첨】 신·구조문 대비표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용어의 정의)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. 1~16. (생략) 17. 최대 초과 대여시간 : 1시간권의 경우 총 4시간, 2시간권의 경우 총 6시간으로 초과될시 분실 및 도난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제한 시간	제4조(용어의 정의)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. 1~16. (현행과 같음) 17. 최대 초과 대여시간 : 본 약관 제14조에 따른 추가요금이 최대로 부과되는 시간(12시간 30분)으로, 경과하는 경우 분실 및 도난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제한 시간
제8조(서비스 제공) ①~⑥ (생략) ⑦ 서울공공자전거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는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따릉이 앱(또는 홈페이지)에서 이용권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으며, 2년 경과 또는 회원 해지(탈퇴) 시 소멸합니다. 세부 운영지침은 별도로 정하여 따릉이 앱(또는 홈페이지)에 게시할 수 있으며, 마일리지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됩니다. 1. (생략) 2. 시민참여재배치 마일리지 : ‘시민참여 재배치’ 사업 기간 중 지정한 시간대에 과다거치 대여소에서 대여하거나 과소거치 대여소에 반납하는 경우 적립되는 마일리지. <삭제> 단, 기본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추가요금이 발생한 경우 적립 불가합니다.	제8조(서비스 제공) ①~⑥ (현행과 같음) ⑦ 서울공공자전거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됩니다. 마일리지는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따릉이 앱(또는 홈페이지)에서 이용권 구매 시 사용할 수 있고, 2년 경과 또는 회원 해지(탈퇴) 시 소멸합니다. 기본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추가요금이 발생한 경우 적립이 불가하며, 세부 마일리지 운영지침은 별도로 정하여 따릉이 앱(또는 홈페이지)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<삭제>

현행	개정안
제10조(서비스 이용시간) ① · ② (생략) <신설> ③ (생략)	제10조(서비스 이용시간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서울공공자전거 3시간제 이용권의 대여 1회 당 기본 이용시간은 180분으로, 회당 180분 이내 반납시 반복대여가 가능하며 일일권 기준 대여 개시부터 2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 1회 이용시 180분 이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울공공자전거가 지정한 추가요금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. ④ (현행과 같음)
제12조(회원자격 정지 및 해지) ① 서울공공자전거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회원자격을 정지,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단, 본 약관 제16조 제7항 제18호 위반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.03%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(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 제4항)에서 서울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이용자격을 정지합니다. 1~3. (생략) <신설>	제12조(회원자격 정지·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) ① -----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비회원 서비스 이용도 제한됩니다. 1~3.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과는 별도로 아래의 각 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된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. 1. 본 약관 제16조 제7항 제17호 위반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.03%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(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 제4항)에서 서울공공자전거를 이용한 경우 : 1년 2. 누구든지 고의로 서울공공자전거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: 1회 위반 6개월, 2회 위반 1년

현행	개정안
②·③ (생략) ④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및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이용제한에 대해 서울공공자전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서울공공자전거가 회원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. ⑤~⑦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1항과 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⑥~⑧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이용자의 의무와 책임) ①~⑥ (생략) ⑦ (생략) 1~7. (생략) 8. 서울공공자전거의 서비스 제공지역(서울시 행정관할구역)을 벗어나거나, 자전거 주행이 금지된 구역으로 서울공공자전거를 이용하여 주행하는 행위 9~18. (생략) <신설> ⑧ 서울공공자전거 이용 도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울공공자전거의 시설물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될 경우, 전체 교체비용이 이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. ⑨ 제8항의 비용청구는 이용자의 등록된 결제	제16조(이용자의 의무와 책임) ①~⑥ (현행과 같음) ⑦ (현행과 같음) 1~7. (현행과 같음) <삭제> 8~17. (현행과 같음) 18. 서울공공자전거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⑧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울공공자전거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서울공공자전거는 그 행위자에게 모든 수리비·교체비·영업손실, 기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⑨ -----

현행	개정안
수단이나 회원이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징수하게 됩니다.	----- ----할 수 있습니다.
⑩ (생략)	⑩ (현행과 같음)
1~11. (생략)	1~11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12. 서울공공자전거의 서비스 제공지역(서울시 행정관할구역) 내에서 주행하여야 하며, 주행완료 후 서울공공자전거 대여소 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.
⑪ 서울공공자전거는 이용자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	⑪ ----- ----- ----- ----- 마일리지 소멸 등 모든 불이익과 책임은 -----
⑫~⑬ (생략)	⑫~⑬ (현행과 같음)